

국가검정품 및 보관품 발체기준 고시

가축위생연구소 고시 제 1993-1호

국가검정동물약품 검정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국가검정품 및 보관품의 발체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993년 4월 22일
가축위생연구소장

1. 항생물질제제

협회 공문 한동협(기획) 제 93-102 호(1993. 5. 1. 참조)

2. 생물학적 제제

가. 제품별 발체량

협회 공문 한동협(기획) 제 93-102호(1993. 5. 1. 참조)

나. 신제품이거나 기존 제품의 병당 포장단위가 다를 경우 검정품 및 보관품의 발체량은 검정기관이 정하는 수량에 의한다.

다. 검정품과 보관품을 발체하여 각각 별도의 포장지에 넣어 봉한 후 품명, 발체일, 발체수량, 발체자 성명등을 기록하고 도장 또는 서명 등으로 표시하여 개봉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재시험, 검정사고 또는 공시품의 파손이 있을 경우 해당 검사소요 수량을 재발체하여 국가검정에 사용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일로 부터 시행한다.

'93년 가축전염병 발생경보(제1호) 발표

농촌진흥청은 4월 26일자로 가축전염병 발생경보(아까바네병, 소 유행열 및 돼지 콜레라 주의보)를 발표 하였다.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국가검정 협조요청

가축위생연구소는 수입동물용의약품의 검정이 통관전 국가검정으로 변경(통합광고 상공부고시 제 1992-49호 : 92. 12. 28)됨에 따라 국내 도착전에 검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수입물품의 도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B/L에 물품도착을 증명하는 표시(예 : 세관에서 날인한 'arrived')하여 국가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동물용의약품중 생산부진 품목조사

최근 생산실적이 부진한 품목에 대하여 가축 방역상 불요불급하게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품목과 수출용 및 93년도에 판매가 활성화될 품목에 대하여 품목보유와 생산부진 사유서를 제출 받았으며 품목보유 사유가 없는 자진취하 품목에 대하여는 허가증을 취합 농림수산부에 제출하였다.

구 분	업체수	품 목
생산부진 및 품목보유 사유서	37	304
자진취하 품목	25	84

부정유통 동물용의약품 조사

협회는 부정 유통 동물용의약품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부정 유통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일제조사를 년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수입 품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영양 사료첨가제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사례를 신고코자 하는 모든분은 무기명으로 수시 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후 농림수산부에 보고하여 시정, 적정을 기할 방침이다.